

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의 이해 자료

<자료출처: '21.9.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 교육자료 편집>



1.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의의

이해충돌방지법 개요

개념 이해충돌이란,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

목적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
⇨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, 국민신뢰 확보

내용

- 제1조~제4조 | 1. 총칙
법 적용 대상 및 용어의 정의
- 제5조~제16조 | 2.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권력
5개 신고·제출 의무 및 5개 제한·금지행위
- 제17조~제25조 | 3.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
위반행위 신고·처리, 신고자 보호·보상, 제도 운영 및 교육홍보 등
- 제26조~제28조 | 4. 징계 및 벌칙
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

I.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의의

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

[적용대상] 모든 공공기관의 공직자

공공기관 제2조제1호

헌법기관
국회, 법원, 헌법재판소, 선거관리위원회, 감사원

중앙행정기관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, 국가인권위원회 포함

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

지자체 및 지방의회, 교육청

공공기관, 공직유관단체

각급 국립·공립학교 등

공직자 제2조제2호

국가 공무원 · 지방 공무원,
공직유관단체 · 공공기관 임직원,
각급 국립 · 공립 학교장과 교직원



II. 주요 내용 : 10대 행위기준

주요 내용 : 10개 행위기준

공직자가 해야 할 5개의 신고·제출 의무와
하지 말아야 할 5개의 제한·금지 행위

신고·제출 의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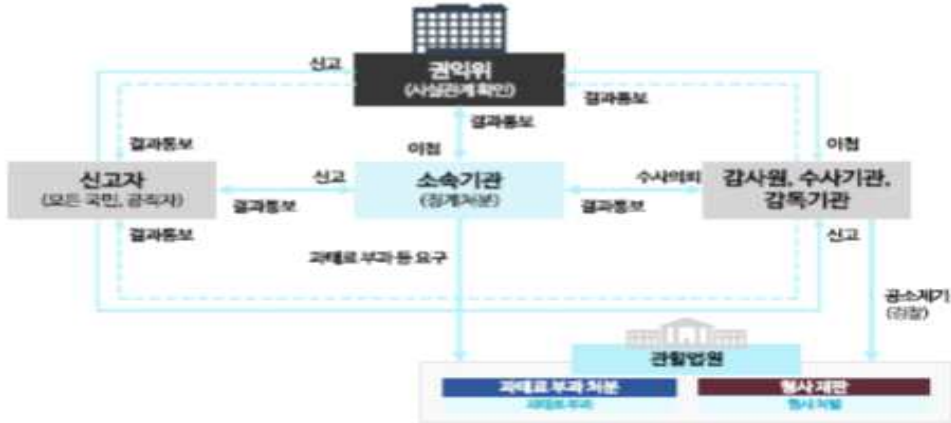
- 1 사적아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·기피 신청
- 2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·매수 신고
- 3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
- 4 직무관련자외의 거래 신고
- 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

제한·금지 행위

- 1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
- 2 가족 채용 제한
- 3 수의계약 체결 제한
- 4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· 수익 금지
- 5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

Ⅲ. 위반행위 신고 및 신고자 보호·보상

위반행위 신고



-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, 그 감독기관, 감사원, 수사기관,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
- 신고 취지 등을 밝힌 기명의 문서로 신고하고, 신고 대상 및 증거 제출

Ⅲ. 위반행위 신고 및 신고자 보호·보상

신고자 보호·보상

☑ 신고자 보호

- 신고 방해·취소강요 금지
누구든지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 취소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
- 불이익 조치 금지
누구든지 신고자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·행정적·경제적 불이익 조치 금지
- 책임감면
자진신고 등을 함으로 인해 자신이 한 이 법의 위반행위 발견된 경우, 형사처벌, 과태료, 징계처분, 그 밖의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 가능

☑ 신고자 보상

- 보상·포상
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온 경우 등에는 포상금 지급 가능,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등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의 신청에 의해 보상금 지급
- 구조금
신고자 등이 신고등과 관련하여 육체적·정신적 치료 등에 든 비용에 대해 구조금 지급 신청 가능

IV. 위반에 대한 제재

이해충돌 방지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

구분	위반행위	제재내용
징계	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공직자	징계처분 (*징계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징계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)
형벌	직무상 비밀·소속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공직자 (§14①)	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 (※ 병과 가능)
	공직자로부터 제공받거나 부정 취득한 비밀·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·재산상 이익 취득한 자 (§14②)	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(※ 병과 가능)
	사적 이익을 위해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한 공직자 (§14③)	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

IV. 위반에 대한 제재

이해충돌 방지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(계속)

구분	위반행위	제재내용
과태료	공공기관(산하기관, 자회사)에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사·유도·묵인한 공직자 (§11)	3천만 원
	수의계약 체결 금지를 위반하도록 지사·유도·묵인한 공직자 (§12)	
	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(§5)	2천만 원
	부동산 보유·매수를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(§6)	
	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(§9)	
	직무관련 외부활동을 한 공직자 (§10)	
	공공기관 물품을 사적으로 사용·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·수익하게 한 공직자 (§13)	1천만 원
	임용·임기 개시 전 업무활동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고위공직자 (§8)	
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(§15)		

IV. 위반에 대한 제재

신고자 보호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

구분	위반행위	제재내용
징계	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 공직자 (§26)	징계처분
형벌	신고자등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 보도한 자 (§27②)	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
	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 (§27③2) <small>*「공익신고자보호법」제2조제6호가목</small>	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
	확정된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(§27③3)	
	신고등을 방해,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(§27④1)	
과태료	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 (§27④2) <small>*「공익신고자보호법」제2조제6호나목~사목</small>	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
	「공익신고자보호법」제19조에 따른 자료제출, 출석 또는 진술서의 제출을 거부한 자 (§28①3)	3천만 원
	특별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(§28②6)	2천만 원

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



2022년 5월 19일 시행됩니다.